

북부 누림센터 공용차량 임차
(아반떼 하이브리드)

과업지시서

2026. 8.

I 과업 개요

□ 과업개요

- 과업명: 북부 누림센터 공용차량 임차
- 과업목적: 북부 누림센터 직원 편의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사업추진을 위한
- 과업기간: 차량 인도일로부터 36개월
- 과업내용: 승용차량 1대 임차(아반떼 하이브리드 / 스마트)
- 발주금액: 금21,600,000원(금이천일백육십만원)
- 계약검수자: 북부지원부 김영

□ 과업내용

- 차종 및 옵션
 - 가. 차종: 승용차(아반떼 하이브리드 / 스마트)
 - 나. 옵션:
 -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, 전·후방 주차거리 경보,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(오토 홀드)
 - 버튼 시동, 스마트 키, USB충전기, 후방 모니터, 크루즈 컨트롤
 - 운전석, 조수석 열선 및 통풍 시트, 공기청정 모드
 - 하이패스, 2채널 블랙박스, 네비게이션(업그레이드 서비스 제공)
 - 쉐어링 기능 및 연간 약정거리 제한 없음
- 임차조건
 - 가. 임차기간: 차량 인도일로부터 36개월
 - 나. 차량인도: 2026. 10. 30.(금)이내(단, 차량출고 일정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)
 - 신규차량 출고기간 고려하여, 대체차량 제공(동급 이상)
 - 다. 차량 인도 및 계약 주소: 경기도 양주시 고삼로43번길 28(삼송동)
 - 라. 임차료: 매월 약정 지급일에 지급(후납 조건)
 - ※ 임차료에 정비료 및 자동차보험료, 각종 공과금, 소모품 교환비 등 포함
 - 마. 약정주행거리: 무제한

3. 차량보험

- 가. 운전자격: 만 21세 이상,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직원 누구나 운전
- 나. 대인배상: 무제한 / 대물배상: 1억원 / 자기손해: 1억원 / 무보험차상해: 1인당 2억원
- 다. 긴급출동 및 차량 사고 시 사고처리 및 긴급대차 서비스 지원
 - ※ 긴급 견인, 배터리 충전, 비상 급유, 잠금장치 해제 등
- 라. 사고면책금: 10만원
- 마. 그 외 사항은 협의

4. 차량관리

- 가. 응급장애 발생시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나. 분기 순회점검(1월, 4월, 7월, 10월 각 1회)을 실시한다.
- 다. 법정검사를 대행하며, 소모품(각종 오일류 등) 일체를 무료 교환한다.
- 라. 신속한 차량점검 및 정비를 위한 지정 정비업체를 제공(지역별 정비업체 리스트 제공)

5. 계약 검수자

- 가. 본 계약에 따른 검수자라 함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임명한 검수자로서 차량 검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- 나. 검수자
 - 소 속: 경기도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북부지원부
 - 성 명: 김 영
 - 연락처: 031)299-5095

III 과업 수행지침

제1조(적용) 이 특수조건(이하 "조건"이라 한다)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용역 카탈로그 계약(이하 카탈로그 계약이라 한다)에 적용하며,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계약예규」 용역계약일반조건(이하 "일반조건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조(계약조건) ① 차량 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하며, 고장 또는 사고 발생 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수리 기간 동안 동급 또는 상위 차종으로 즉시 대체차량을 무상 제공한다. 즉시 대체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월 임대료(해당 월 일수 기준)를 일할 계산*하여 “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”에 배상한다.

* 임차차량 입고(수리센터 등)일 기준

- ② “계약상대자”는 차량 공급 시 신차증명서(차량등록증), 보험가입증명서 등 기타 “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”가 요구하는 서류(원본 또는 사본)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차량의 옵션사항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상호 협의 후 조정한다.
- ④ 기술검토 및 안전도 검사는 차량 출고 전 필하여야 한다.
- ⑤ 차량점검, 정비비, 법정검사 및 검사비 등 일체 “계약상대자”가 부담한다.
- ⑥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는 사항 또는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처리한다.

제3조(납품기일 등) ① 본 계약 체결 후 납품기일(2026.10.30.)에 맞춰 납품장소 납품하여야 한다.

- ② “계약상대자”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“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”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, 차량 출고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일까지 차량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동등 이상의 차량을 대체 지급하여야 한다.

제4조(정기순회 점검 등) ① 분기 순회점검은 1월, 4월, 7월, 10월 각 1회 실시하며, 검수자에게 아래의 서류*를 제출하도록 한다.

② 분기 점검은 일정조율 후 진행하도록 한다.

*검사확인서 1부. ※ 계약 상대자 양식사용 가능

제5조(임차료 청구 등)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약정한 임차료를 “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”에게 청구한다

② 임차료에는 정비료 및 자동차보험료, 각종 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.

- 대금지급방법: 월납

- 대금청구는 관련 서류와 함께 나라장터로 청구 한다.

③ 대금청구 시 필수 제출 증빙서류

- 청구서, 세금계산서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, 국세납세증명서, 지방세납세증명서, 4대보험완납증명서 각1부.

제6조(편의 장치 및 서비스)

① “계약상대자”는 다음 조건이 포함된 차량을 “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”에 설치 후 공급하여야 한다.

1.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, 전·후방 주차거리 경보,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(오토 홀드)
2. 버튼 시동, 스마트 키, USB충전기, 후방 모니터, 크루즈 컨트롤
3. 운전석, 조수석 열선 및 통풍 시트, 공기청정 모드
4. 하이패스, 2채널 블랙박스, 네비게이션(업그레이드 서비스 제공)
5. 쉐어링 기능 및 연간 약정거리 제한 없음

② “계약상대자”는 응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7조(차량 점검 및 수리)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안전운전을 위해 분기 정기점검(각종 오일, 기타 소모품, 마모에 의한 타이어 상태 등)을 실시하여야 하며, 필요시 정비 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 교환, 수리를 받아야 한다. 차량의 점검, 정비비, 검사비 등 일체의 비용은 “계약상대자”가 부담한다.

② “계약상대자”는 운행 불가로 인하여 정비 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“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”에게 입고 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차량을 빠른 시간 이내 공급하여야 한다.

③ “계약상대자”는 차량이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 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을 사용하여,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 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“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”에서 고장 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.

④ 신속한 차량점검 및 정비를 위한 지정 정비업체(지역별 정비업체 리스트 제공)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험 가입) “계약상대자”는 다음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“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”에게 공급하여야 하며, 보험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다.

1. 운전자격: 만 21세 이상,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구나 운전
2. 대인배상: 무제한
3. 대물보상: 1억원
4. 자기손해: 1억원
5. 무보험차상해: 1인당 2억원
6. 사고면책금: 10만원
7. 긴급출동, 차량 사고 시 긴급대차 서비스 등
8. 그 외 사항은 협의

제9조(사고처리 및 보상) ①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“계약상대자”의 책임으로 한다.

②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“계약상대자”의 부담으로 한다.

③ “계약상대자”는 사고, 고장 등으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 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.

제10조(차량반납) “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”는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차량 반납은 납품 시 설치된 사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인계하며 수리비 등 차량 상태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.

제11조(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) “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”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“계약상대자”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
2. “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”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
3. “계약상대자”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
4. “계약상대자”로 인하여 “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”가 업무상 상당한 손실 및 손해를 입었을 경우
5. 기타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

제12조(계약상대자 의무)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계약상의 의무를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한다

- ② “계약상대자”는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- ③ “계약상대자”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접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.

제13조(계약만료) 본 계약은 계약 기간의 종료에 따라 자동으로 만료된다.

제14조(계약해석 및 관계법령 적용)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.